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사 건립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마포구 구청사 건립기금이 신청사 완공으로 그 설치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본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 함(본문)
- 나. 이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함(부칙 제1조)
- 다. 이 조례 폐지에 따른 잔여 기금은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함(부칙 제2조)

3. 폐지조례안 : 별첨

4. 예산조치 : 기금의 잔액은 구 일반회계로 여입

5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생략 : 『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』 제4조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11.18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의 잔여액은 마포구 일반회계로 여입한다.